

진흥회 개시판

미·EU 통상세미나 안내

UR타결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각국은 시장개방이라는 의무 이행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통상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통상관련 규정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에 본회는 NAFTA와 EU의 수입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외투자 또는 해외진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GSP, 무역특혜협정, 반덤핑 규정 등의 명확한 이해를 돋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주 제 : 효과적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통상법 교찰

2. 일 시 : 1995. 9.26(화) 14:00

3.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강남구 역삼동, 본회 맞은편 국기원 입구)

4. 연사 및 주요 내용

시 간	발 표 내 용
14:00~15:00	Michael P. House 1. 미국 원산지 규정 의회 관세법 개정안, 관세법, GSP, NAFTA 원산지 규정 2. 반덤핑/보조금 규정 규정案, 新규정 적용 최근 사례, 국제 무역위원회 반덤핑 사례 3. 슈퍼 301조 UR타결 이후의 분쟁 사례 사례연구: 미·일 자동차 협상 미·일 필름 분쟁 한·미 쇠고기 분쟁 향후 한·미 분쟁 가능성 연구 4. 이전가격 新 IRS(미국세청) 규정 IRS/세관 협력관계 반덤핑 가격산정 관계 5. 미국 입법 진행 현황

시 간	발 표 내 용
15:10~16:10	Edwin Vermulst 1. EU관세법 관세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2. 최근 EU 통상법 현황 GATT Audio Tape Committee 패널보고 변화내용(eg. time limit)
16:20~17:00	최상태 회계사 효과적 해외진출을 위한 반덤핑 등 국제 통상법 고찰
17:00~	질의응답
	5. 참가비 : 자료대 ₩10,000 6.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 통상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TEL : 555-6187, 553-0941/7 FAX : 563-7371, 555-6195

한국전자산업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안내

1. 목 적

○ 한국 전자산업 세계화에 관한 국내외 인식

제고

○ 전자산업 국제협력 방안 모색

○ 해외투자 유망지역 소개

2. 기 간 : '95.8.31(목)~9.2(토), 2박3일

3. 장 소 : 제주도 KAL호텔(서귀포)

4. 참가비 : ₩350,000

(숙식비, 항공료 등 경비일체)

※ 부부동반 경우 ₩ 450,000

5. 참가대상 : 본회 회원사, 한국소재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주한외국공관, 해외투자 유관 기관 임직원(30명)

6. 참가비 납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구좌번호: 196-05-066523, 상업은행)

7. 사용언어 : 영어(전 일정)

▣▣▣▣▣ 진흥회 개시판 ▣▣▣▣▣

8. 신청기한 : '95. 8.12
 9.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
 (국제협력과)
 (Tel : 554-6739, Fax : 563-7371)

— 일정 —

일자	내용
8.3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출발→제주도착(KE 227) ○ 호텔 체크인 & 등록 ○ 개회식 (전자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상원) ○ “비전있는 경영자와 환경창조 프로세스”(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 ○ 환영 리셉션(석식)
9. 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통상산업부 박인구 과장) ○ 한국전자산업 및 해외투자 현황소개 (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장 최영훈) ○ 휴식(커피 타임) ○ 한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모토로라 부사장 Rhyn H. Cheigh) ○ 중식 ○ 주요기업 해외투자 전략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이재경 상무 - LG전자 조기송 상무 - 대우전자 강탁명 이사 ○ 휴식(커피타임) ○ 해외투자 유망지역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싱가폴 - 벨기에 - 종합토의 ○ 폐회 ○ 석식
9. 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 탐방(08:00) 혹은 골프 (07:30) ○ 제주출발→서울도착(KE 226)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융자안내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총 8,800억원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각 생산자단체(문의처 참조)로부터 대출대상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계를 국내생산자로부터 산업시설로서 구입하는 기업자
- ④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및 「자본재산업 개발 전략 품목」중 연간 수입실적 3백만불 이상인 기계설비류
- ④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기계설비류
- ④ 일관생산 기계설비류(연간 수입실적 3백만불 이상인 것에 한함), 자동화관련 기계설비류 및 중소기업자가 '92년 이후 신규개발한 기계설비류
- 대출금지부문
 - 가정용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여신금지업종
 -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상 시설대여 금지업종
 - 금융부실거래자
- 대출방식 : 미달러화표시 원화대출
- 대출기간 : 8년이내(1/3이내의 거치기간 포함)
- 대출이율 : U\$ LIBOR(3개월물) + 2.0%
- 대출비율
 - 중소기업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100% 이내
 - 대기업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 수출대상자 선정 : 신청순서대로 선정하되 우선순위 설정 운용

진흥회 개시판

- 대출신청기간 : 선순위부터 신청접수개시하며
한도 소진시 접수종료

순위	해 당 업 체	접수개시 일자
1순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②, ④, ⑤호 품목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95.7.12
2순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②, ④, ⑤호 품목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이 생산하는 ③, ④, ⑥호 품목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95.7.27
3순위	대기업이 생산하는 ③, ④호 품목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95.8.11
4순위	대기업이 생산하는 ④호 품목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95.8.26

-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신청서류
- 실수요 요건 및 우선순위 입증서류(대출대상품목 확인서, 계약서 사본등)
- 대출신청접수 및 대출취급 : 전 금융기관(주택, 수출입은행 제외) 대출영업점
- 대출대상품목 확인서 발급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전품목) 및 각 생산자단체(특정품목)
- 문의처
 - 지원제도관련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2)
 - 대출관련 : 한국산업은행 자금부(398-6154, 6155, 6156, 6158) 및 거래은행
 - 대출대상품목 확인 관련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기술부(369-7804) : 전품목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업무부(565-2721) : 공작기계류 및 로보트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업무부(369-7514) : 냉동공조기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업무부(576-3472~4) : 반도체장비
 -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267-8323) : 재봉기

- 한국섬유기계협회(706-0827) : 섬유기계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부(557-2417) : 통신기기류, 계측기기류, 정보처리시스템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기술지도과(424-4901~4) : 전기기계류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 요령 안내

공업진흥청 고시 제95-219호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한다.

1995. 7. 1
공업진흥청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므로써 자본재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류”라 함은 모든 제품의 생산 수단에 사용되는 자본재로서의 기계를 말하며 가정용 내구성 소비재는 제외한다.
2. “부품”이라 함은 광의의 기계류(가정용 내구성 소비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소재”라 함은 기계류 및 부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말한다.
4.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생산 현장의 기술력과 개발된 제품의 품질·성능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 풍호 | 제시판

제3조(품질인증 대상) 품질인증 대상은 제2조의 기겨류·부품 및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일 당시 3년 이전에 일반화된 기술
 - 건전한 국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14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공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발된 제품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 제품 또는 카다로그
 - 제품의 설계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승인서 또는 평가서

제5조(품질평가) ①기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품질평가는 현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품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현장실사) ①기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기술원 직원 및 전문가로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장 실사는 생산 공정의 적정성, 품질관리 상태 등 품질보증 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제품평가) ①제품의 평가는 국립공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평가시 KS 또는 국제 규격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품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서 교부 및 결과통보) ① 기술원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평가 결과 우
수한 제품에 대하여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기술원장은 품질평가 결과를 신청인과 지원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표시) ①기술원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 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EM」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평가위원회는 기술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술원장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심의회의에 회부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평가 한다.

1. 제품평가 기준의 적정성 여부
 2. 품질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품질인증 여부
 3. 제조업체의 기술력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4. 기타 품질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12조(품질인증제품의 지원)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2항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자(제품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있어서 관련 기관장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2.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3. 외화 대부등 국산기계구입자금 융자
 4.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 하자 보증
 5.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등의 우선 구매

▣▣▣▣▣▣▣▣▣▣▣ 진흥회 개시판 ▣▣▣▣▣▣▣▣▣▣▣

제13조(이의신청)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 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술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서의 변경)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기술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기술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원 이외의 다른 시험연구 기관에 제 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품질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처분) ① 기술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 할 수 있다.

가. 제9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표시제품의 사후 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개선 명령 처분을 받고 기일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표시제품의 사후 관리 결과 중결함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1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원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요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개혁 3/4분기 세부추진방안 안내

(1) 휴지·껌·담배꽁초 함부로 안버리기, 차례 지키기

- 역·터미널·유원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집 중적 계도·단속활동 전개
- 다중 집합장소에서 계도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협조 강화

(2) 보행자는 무단횡단 안하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주·정차 질서지키기

- 보행자 무단횡단이 많은 곳에 대한 방지시설 확충
- 횡단보도 배치의 적정성 종합검토 재조정 실시

- 지키도록 규정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 고취차원의 횡단 정지선 지키기의 대대적 홍보·계도 및 단속병행 실시
- 유원지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요금 폭리근절

- 유원지 진·출입로 등 주변 불법주차 중점 계도·단속
-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내 차도내 진입차 잡기 행위 등 근절

(3) 행락지 쓰레기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내집앞 우리동네 청소하기

- 상가번영회, 요식업조합 등 민간자율 계도·홍보활동 유도

- 「행락 불편신고센타」 운영, 규격봉투 현지 배포 등 행락불편 해소 및 계도활동 전개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상주단속반 편성·단속 실시

- 주말자연 정화활동 지속 전개

- 지역별 조기청소의 날 운영등 공동체의식 및 지자체 운영과 연계한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전개 유도

▣▣▣▣▣▣▣▣▣▣▣▣▣▣▣▣▣ 진흥회 개시판

(4) 1회용품 줄이고 재활용품 사용 늘리기

- 사업자 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및 패스트푸드점, 고속·국도변 휴게소 등 취약지 집중 단속
- 민간단체 참여 1회용품 사용절제 국민운동 전개
- 자치단체별 재활용센타 개장, 홍보 및 운영 강화
- 대형 생활폐기물 수리판매, 교환기능 등 재 활용 홍보교육장 마련
- 관련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유도

(5) 가정·직장내 대화예절 지키기, 손님과 종업원 간 서로 존대하기

- 공공기관, 사회·직장 교육훈련기관에 대화 예절 교육교재 제작 배포, 교육실시 협조
- 토론문화 정착 세미나 개최 등 관심 제고
- 언론사,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족회의 갖기 운동전개 및 명절때 대화예절 지키기 홍보
- 식당 등 각종 서비스업소 이용시 품위유지 홍보
- 식당예절 등에 대한 학교 및 국민교육 실시
- 소비자 단체 등 민간운동 전개

스페인 안달루시아 투자 환경 안내

1. 안달루시아 진흥공단(IFAC)

- IFAC는 안달루시아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로 1987년 설립, 주정부가 설정한 경쟁력 제고와 산업화 촉진에 그 목적을 둠.
- IFAC는 안달루시아주 역내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임무로는
 - 안달루시아주에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
 - 내부자원이 불충분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 IFAC가 취하는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은 최종 투자금액보다 투자프로젝트 특성을 중시하는 점이며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IFAC의 대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시 고려사항
 - 총 투자금액
 - 고용창출 효과
 - 적용 기술의 유형
 - 지역 경제발전에의 영향
 - 투자지역

① 재정적지원

- 개념이 탄력적이며 주로 산업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둠.同지원은 신속한 절차에 의해 집중됨.
- Direct Loan(융자)
 - 이자율(8%)과 감가상각기간(5년까지)과 관련된 Soft credit
 - 규모는 최대 2억페세타까지 지원
- Equity Financing(자본금 조달 지원)
 - 기업의 자체자금력을 증가시켜 프로젝트 개발을 독려, 상장계획에 대처할 수 있게 지원. 금융권과 제3자의 보증을 유도, 기업을 지원함.
 - Financing의 기간은 한정, 산업분야와 사업 하부구조 프로젝트에 중점을 지원

- Subsidized interest rates(이자지급금 보조)
 - 신규투자, 사업확장, 재무구조 재편성에 중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초기에 전액 지급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투자업체들은 대출금의 최종금리에 대해 8% 한도내에서 IFAC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Direct Subsidies(IFAC지원금)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미반제 자본증여 형태로 종업원 교육과 조사업무에 관한 지원임.

②기술적 지원

- 사업경영개선

▣▣▣▣▣▣▣▣▣▣▣▣ 진흥회 개시판 ▣▣▣▣▣▣▣▣▣▣▣

- IFA는 사업경영개선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진단, 경쟁력 제고, 사업의 다각화, 사업성 개선등 상기 분야에 대해 50%까지 보조금 지급
- 기술적 조언 지원
 - 사업투자의 초기단계부터 전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 제공
 - 사업진단, 경쟁력 제고, 사업의 다각화, 사업성 개선 등 상기 분야에 대해 50%까지 보조금 지급
- 기술적 조언 지원
 - 사업투자의 초기단계부터 전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 제공
 - 지방정부와의 면담 주선, 협작 파트너 물색, 상황분석 및 산업용 부지 물색, 기술 및 경영 자문등을 지원

2. 세제혜택

- 스페인의 기본 법인세는 35%임
-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투자시 5%의 세금공제
- R&D프로그램 투자시 무형비용의 15%와 고정자산비용의 30% 세금공제
- R&D프로그램에 대한투자가 2년간의 평균 투자금액 초과시 위에 언급한 공제비율은 각각 30%, 45%가 됨.

3. 고용 인센티브

- 고용 인센티브
 - 창출된 고용인원 및 직위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 지급됨.
 - 29세 이하 : 4십만 폐세타
 - 45세 이상 : 5십만 폐세타
 - 여 성 : 5십만 폐세타
 - 장애자 : 7십만 폐세타
 - 대졸자 인턴사원제 :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1년, 2년, 3년차의 급여는 동일 직종 종사자 대비 최소 70%, 80%, 90%를 보장

하여야 함.

- 교육 인센티브
 - 경영 및 생산분야에서의 현실을 위한 기업의 교육프로그램 소요비용에 대해 100% 보조금 지급
 - 특화산업군에 포함된 기업에 의해 진행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 가능
 - 프로그램의 Follow-up과 평가는 지역노동청의 소관임.

4. 지역 인센티브에 관한 법(요약)

- 안달루시아 전체지역은 유럽공동체의 개발 목표 1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승인된 총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됨.
- 지역 인센티브 수혜 가능 분야
 - 추출 및 변환산업
 - 농업관련 산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상업구조 증진 서비스업
 - 신규호텔업(비포화지역), 호텔현대화, 지역관광업종
- Items eligible for incentives
 -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토지 획득
 -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시화와 관련된 일
 - 민간부문
 - 프로젝트의 계획, 엔지니어링 및 경영
 - 기업이 수행하는 R&D
 - 주요 고정자산에의 투자
- Condition
 - 기술적, 경제적, 재정적 경쟁력 확보
 - 승인된 총투자금액의 최소 30% 자기자금조달력
 - 계획된 투자는 지역 인센티브의 적용이전에 시작하지 않음.
- Evaluation criteria
 - 지원금 총액은 허가된 투자의 총투자액, 고

진흥회 개시판

용창출, 프로젝트 특성(신규, 확장, 개선 또는 철수) 등에 의해 결정됨.

- 지역의 생산적 요소의 사용은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나 생산성, 기술이전 가능성, 지역경제에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
- 문의처 : 본회 국제협력과(Tel : 553-8725)
안달루시아 경제진흥공단 주일대표사무소
Tel:(03)3438-2153 Fax:(03)3438-2154

신상품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상품 중 공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신상품을 발굴하여 공사 전배포처(해외무역관, 한국상품상설전시장, 명예 KOTRA대표 등)에 이들 상품의 상담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바이어 발굴 및 인콰이어리 제공 등을 통해 국내업체들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2. 선정기준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기타 인증(장영실상 등)을 획득한 상품
- 수출이 유망하고 시장성이 있는 상품

3. 신청서류

- 공사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상품 영문카탈로그 2부
- OFFER SHEET 또는 가격표 1부
- 특허증, 실용신안증, 기타 수상관련 자료 등

- 4.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개척부
시장개발과 이종윤(Tel:02-551-4377, Fax: 02-551-4373, 4394)

개산환급율 적용신청 안내

1. 제도의 개요

- 당해업체의 품목별 최근 1년간의 평균환급액을 개산환급금으로 하는 개산환급율표 작성고시(업체 선정→관세청장 작성 고시)

-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산환급율표에 게기된 관세 등 환급금을 개산액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정산시 수출면장상에 선(기)적 사실 등 기재 확인)

* 정산기간 : 6월(수출물품을 직수입원재료로 만 제조·가공하여 수입면장,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 교시업체의 개산환급율표 적용여부는 환급신청건별로 수출업체에서 임의 선택하는 것 이므로 업체의 형편에 따라 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임.

2.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94.7.1~'95.6.30까지 1년간 수출물품별(HS 10단위)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
- 접수기간 : '95.7.25~8.25
- 접수처 : 관세청 민원실(우편접수 가능 : ⑨135-7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3. 구비서류

- 개산환급율 고시신청서 (갑) (을) (병) 각 1부
- * 신청서식은 관세청 민원실, 세관 및 환급은행에 비치

- 신청 수출물품(HS 10단위)별 대표적인 수출면장(사본) 각 1매

4. 고시신청서 작성방법

- 따로 붙인 작성요령대로 하되 평균환급액 산출은 \$ 10당임.

5. 기타 참고사항

- 적용예정 : '95.9.10이후 개산환급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
- 의문사항 문의처 :

▣▣▣▣▣▣▣▣▣▣▣ 진흥회 개시판 ▣▣▣▣▣▣▣▣▣▣

관세청 민원실 ☎ (02)512-3100

관세청 환급과 ☎ (02)512-2303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융자 대상품목 확인업무 수수료 안내

우리 전자공업진흥회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4호(1995.7.10)와 관련하여 계측기기·통신기기 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자관련기기분야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대상품목 확인업무를 정부로 부터 위임받아 시행함에 있어, 신청서양식 인쇄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 회원사 서비스 배가의 해”사업의 일환으로 본회 회원사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융자대상품목 확인 수수료 징수
 - 금액 : 1개 모델당 10,000원(부가세별도)
 - 징수시기 : 확인서 발급시
 - 수수료면제 대상업체 : 본회 회원사
 - 시행시기 : 1995. 7.30

1995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안내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무역의 날 32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와 질적고도화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합니다.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며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신시장개척 수출, 대일수출, 수입대체 기술개발 제품수출 등 수출의 질적고도

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종합무역상사에 대하여는 수출실적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수출대행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해외근무경력자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5년이내 정부포상 수상자는 정부포상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만불대 탑(2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1백만불 탑- 5백만불 탑○ 천만불대 탑(2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불 탑- 5천만불 탑○ 억불대 탑(5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1, 5, 10, 50, 100 억불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포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포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훈장(5등급)- 산업포장○ 표 창<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한국무역협회장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유공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상표수출업체- 우수품질제품수출업체- 일봉시장개척유공업체- 소액수출업체- 해외교포무역인- 음류무역대리업자- 갑류무역대리업자- 무역지원 유공자

3.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 가. 신청서 배부 : '95.8.1(화)~8.16(수)
- 나. 신청 및 추천기간 : '95.8.7(월)~8.23(수)

4.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

(Tel : 551-5334~9)